# 노숙인복지시설

- \* 목차
- 1. 노숙인복지시설 개관
- 2.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
- 3. 노숙인복지시설 현장탐방
- \* 학습목표
- 1. 노숙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.
- 2.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- 3. 노숙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

## 1. 노숙인복지시설 개관

- 1. 노숙인복지 적용대상자
- 노숙인의 정의
  - •노숙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
    - 가.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  - 나.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   - 다.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#### 노숙인의 분포

- 거리 노숙인
- 일시보호시설의 노숙인
- 자활시설의 노숙인
- 재활·요양시설의 노숙인
- 쪽방주민
- 과거 부랑인이라 불려짐
- 노숙인의 권리와 책임
  - 노숙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
  - ■노숙인은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,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

## - 노숙인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2008년	2013년	2018년
합계	14,288	12,656	10,801
자활	3,479	2.095	1,684
일시보호	_	844	1,047
거리	1,317	1,197	895
재활·요양	9,492	8,520	7,175
쪽방주민	6,119	5,992	5,664

## 2. 노숙인복지시설

- 근거법률
  - ▶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(2012년 제정)
- 시설의 설치·운영
  - 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·운영
  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
  - •국가와 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 시·군·구청장에 신고
-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

구분	시설개요	시설	시설
,		유형	현황
종합지원센터	상담 및 서비스 연계	이용 시설	10
노숙인일시보호 시설	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	이용 시설	8
노숙인자활시설	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 업상담·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구, 노숙인쉼터)	생활 시설	58
노숙인재활시설	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	생활 시설	
노숙인요양시설	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 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	생활 시설	57
노숙인급식시설	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시설	이용 시설	4
노숙인진료시설	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, 치료, 재활 등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시설	이용 시설	3
쪽방상담소	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·취업지	이용	10

원·생계지원,	그 밖의	행정지원	서비스를	제공하는	ᆲᅿ
시설					^]^글 

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※시설현황은 2018년 말 현재 현황임(개소)

- 노숙인복지시설의 기준
  - ■남·여 시설을 구분 운영
  - ■시설 및 수면실 면적기준 제시
  - 감염병환자는 격리 보호
  - •설비: 수면실, 사무실, 의무실, 조리실, 화장실, 세탁실, 물품보관실 등 구비
  - 직원 : 시설장, 상담요원, 생활복지사,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등
-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·퇴소
  - 입소·퇴소하려는 노숙인은 시설의 장에게 직접 입소나 퇴소를 요청(자진입소)
  - •시·군·구청장, 경찰관서의 장은 노숙인의 입소를 의뢰 가능(입소의뢰)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·상담하며, 노숙인입소·퇴소심사위원회가 심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의뢰가 있을 경우 시설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불가
  - •시·수·구청장은 입소·퇴소 결정 및 전원 등을 위해 입소·퇴소심사위원회를 둠 (해당 노숙인의 건강상태, 근로능력,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심사)
-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
  -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
- 노숙인종합지원센터(구, 상담보호센터)
  - 주거·의료·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
  - 응급조치
  -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
  - 심리상담 등
  - 현황 : 전국 10개소 (서울 2개소, 부산 2개소, 경기 3개소, 대구·대전·제주 각 1개소)
- 인권교육
  -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
- 금지행위
  - 노숙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  - 노숙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
  - ■노숙인을 위한 증여 또는 급여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  -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의 입소·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강압하는 행위
  - ▶ 노숙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
  - 노숙인을 폭행·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정신적·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

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

- 인권지킴이단
  - ▶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운영자는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둠

## 2.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

#### 1. 노숙인복지사업 연혁

- 1981.10 정부차원 부랑인 보호대책 마련(명랑사회 구현)
- 1987.4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정
  - 형제복지원 사건 후속작업
- 2000.8 부랑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규칙 제정 2005.1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·운영규칙 개정
- 2012.6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
- 2016.2 제1차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·공포(2016-2020)

#### 2 복지서비스(프로그램) 내용

- 예방활동
  - ▶노숙유입 에방을 위한 지원
  - 주거 취약계층 발굴 강화 및 민간자원 연계, 긴급복지지원
- 주거지원
  -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: 시·군·구청장 등은 시설장에게 노숙인보호를 의뢰
  - •기타의 사회복지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
  - •임대주택(매입임대 포함)의 공급
  - •임시주거비 지원 등
  - •시·군·구청장 등은 노숙인에게 주거지원을 할 경우 거주 안정성 유지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
- 급식지원
  - 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·운영
  - 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(집단급식소)을 설치·운영하려면 시·군·구청장에 신고

※집단급식소는 비영리시설로서 50인 이상 식사제공(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, 신고, 운영)

#### - 의료지원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·운영(의료급여법)
-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
- 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시·군·구청장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(의료급여기관일 것)
-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등에 의뢰·위탁 가능
-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
  - 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에 필수물품을 지원 가능

#### - 고용지원

- 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에게 고용정보 제공, 직업지도, 취업알선,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을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 실시
- 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 실시하려면 시·군·구청장에 신고
- 응급조치의 의무
  -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관련업무 종사자는 노숙인에 관한 응급상 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
  -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

#### 3. 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분류(예시)

대상	이용가능한 시설	내용
거리 노숙인	●일시보호시설 또는 자활·재활·요양시설 ●종합지원센터  ●노숙인급식시설 ●노숙인진료시설, 무료진료소 ●쪽방상담소	-일시잠자리 제공, 식사 제공, 응급처치 -주거·의료·고용지원을 위한 상담, 심리 상담, 의료급여 등 서비스 연계 -3-4개월 주거비 및 생활용품 지원, 주 민등록복원, 수급자책정 등 -무료급식 -무료진료(시설에서의 비급여항목은 본 인부담) -쪽방거주자 상담, 취업지원, 생계지원, 기타 행정지원
입소시설 노숙인	• 노숙인자활시설	-일정기간 보호 -식사제공 -무료진료 -생활지도,상담, 직업상담·훈련,취업연계 -3개월 이상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

• 노숙인재활 • 노숙인요양	· -재활프로그램, -생활지도,상담	요양서비스 , 직업상담·훈련,취업연계  주자 매입임대주택 지원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 4.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및 업무

구분	자격기준	업무
시설장	<ul> <li>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</li> <li>사회복지시설 부장급 및 사회 복지분야 공무원 5년 이상 자</li> <li>종교업무 종사자로서 단체 추 천 받은 자</li> </ul>	
상담요원	<ul><li>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</li><li>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 경력자</li></ul>	-입소자 상담·관찰 및 연고자확인 -상담결과 전원, 장·단기보호 구분 -사회복지서비스 제공 -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
생활복지사	<ul><li>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</li><li>대학 등에서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동등 학력자</li></ul>	-매일 입소자 건강 및 생활 관련 사항 점검, 지원
정신건강 전문요원	▪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보유 자	-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위한 생활훈련, 직업훈련, 심리상담 및 간호

# 3. 노숙인재활시설(비전트레이닝) 현장탐방

#### \* 학습평가

- 1. 다음중 규정상 노숙인에 대한 설명으로 관계가 먼 것은?
  - ① 18세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- ②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  - ③ 구걸을 하며 지하도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
  - ④ 주거라 하기에 적절치 않은 곳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는 사람
  - ⑤ 노숙인은 경찰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함

### 정답: 3

(노숙인시설을 이용·생활하거나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혹은 적절치 않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이라 하며, 이들은 응급조치에 응할 의무 를 갖는다)

2. 다음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는가?

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- ① 노숙인종합지원센터
- ② 노숙인자활센터
- ③ 노숙인일시보호시설 ④ 노숙인진료시설
- ⑤ 노숙인요양시설

#### 정답 5

(노숙인요양시설이 일정기간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)

- 3. 노숙인복지시설의 주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는 것은?
  - ① 생계비 지원
- ② 의료지원
- ③ 주거 및 급식지원 ④ 응급조치
- ⑤ 고용지원

#### 정답 1

(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)

#### \* 학습요약

- 노숙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, 노숙인시설을 이용 혹은 생활하는 사람,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 람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
- 노숙인시설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설로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외의 자가 설치·운영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
- 노숙인복지시설로는 일시보호시설, 자활시설, 재활시설, 요양시설, 급식시설, 진료

시설, 쪽방상담소 및 종합지원센터가 있다

○ 노숙인 복지서비스로는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여성 보건위생용품 지원, 고용지원, 응급조치 등이 제공된다